

제35조 구상채권상각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의 요약

-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방문판매공제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설정 대상법인임.
-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이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시 충당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에 산입함.
- 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Min[1%, 구상채권발생률]임(2010년은 0.4%와 구상채권 발생률 중 큰 금액, 2011년은 0.2%와 구상채권 발생률 중 큰 금액).
- 회수불능 구상채권 등과 상계처리 가능함.
- 대손금과 상계처리한 후의 차감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 과세표준신고 납부시 충당금명세서를 제출함.

●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③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

- 특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⑤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1.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법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① 본 조의 개요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지역신용보증조합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의 1%(2011년은 0.2%와 구상채권 상각률 중 큰 금액)와 구상채권 상각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K-IFRS 적용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계상하고 이익처분시 충당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함)하며, 충당금은 회수불능 구상채권 등과 상계처리하며, 상계처리한 후의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즉, 신용보증사업법인은 매사업연도에 충당금의 손금산입(전입)과 익금산입(환입)이 계속 반복 계상된다.

② 대상법인과 명세서 제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법률상의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한국수출보험공사·근로복지공단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엔지니어링공제조합·소프트웨어공제조합·방문판매공제조합·한국주택금융공사·소방산업공제조합을 말한다. 이들은 손금산입을 위해서 과세표준신고시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61조제2항제18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9호의 법인 (2009. 2. 4 개정)
 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003. 11. 29 개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005. 3. 8 개정)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009. 2. 4 개정)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2011. 1. 17 개정)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2003. 12. 30 신설)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2003. 12. 30 신설)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2004. 3. 22 신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008. 2. 22 신설)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008. 2. 22 신설)
 11.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008. 2. 22 신설)
 1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2010. 2. 18 신설)
 13.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2010. 12. 30 신설)
- ⑤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③ 손금산입(=보증잔액×1%)후의 대손금 상계 가능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금액은 신용보증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1%)와 구상채권 상각률(직전연도 신용보증잔액 중 해당연도 구상채권 발생액)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1년도는 0.2%와 구상채권상각율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또한 이들은 회수불능 및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 발생시, 발생한 대손금과 충당금을 상계할 수 있다. 물론 법인이 충당금과 상계처리하지 않고, 발생한 대손금을 직접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손금인정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과 구상채권발생률(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④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2009. 2. 4 개정)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2008. 2. 28 개정)

● **시행령 부칙 제19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구상채권발생률은 다음에 따른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천분의 8과 구상채권발생률 중 큰 비율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천분의 6과 구상채권발생률 중 큰 비율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천분의 4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큰 비율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천분의 2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큰 비율

II.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익금산입 (법 제35조제2항)

① 차년도 익금산입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대손충당금과 비슷한 성격의 충당금인바, 당년도 신용보증잔액의 0.2%와 구상채권상각률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차년도 중의 구상채권대손금과 상계하고 미상계된 잔액은 차년도말에 환입하여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한 충당금은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②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의 차액만 설정 가능

충당금을 매년 설정 및 환입하는 경우는 당년도의 환입대상금액과 설정대상금액과의 차감잔액만을 설정하거나 환입하는 순액주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바, 이는 회계처리상의 총액주의에 반하는 개념이지만 세무상 인정된다 하겠다. 물론 전표나 회계기록에 의거 손금산입금액과 익금산입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반영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회계처리상 차변·대변으로 대응됨을 말한다.